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가단5196356 판결 [계약금 반환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태
담당변호사 한범수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5. 12.
판 결 선 고 2021. 5.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31.부터 2021. 5.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20. 6. 말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마스크 100만 장을 장당 770원, 계약금액 770,000,000원에 원고에게 공급하되 2020. 7. 7.까지 50만 장, 2020. 7. 10.까지 50만 장을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위 납품예정일인 2020. 7. 7. 원고에게 마스크를 납품하지 못하였다. 즉 이 사건 납품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반환하지 않은 나머지 물품대금 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마스크를 다른 판매처에 재판매하여 전매차익을 얻을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특별손해로서 그 전매차익에 해당하는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상회복 청구에 대한 판단

1) 판단

갑 제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0. 6. 30.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마스크 100만 장을 장당 770원, 계약금액 770,000,000원에 원고에게 공급하되 2020. 7. 7.까지 50만 장, 2020. 7. 10.까지 50만 장을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납품계약 금액 중 일부로 2020. 6. 30. 20,000,000원, 2020. 7. 2. 20,000,000원, 2020. 7. 3. 1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피고는 위 납품예정일인 2020. 7. 7. 원고에게 마스크를 납품하지 못하였고, 다음날인 2020. 7. 8. 원고에게 10,000,000원을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의 귀책사유 있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납품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20. 7. 3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납품계약은 피고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써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 4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일 30만장 내지 50만장, 월 1,000만장, 1년간 1억장의 마스크를 장당 770원에 납품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50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 당일인 2020. 6. 30. 계약금의 10%인 5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계약금 450,000,000원은 2020. 7. 3.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2020. 7. 3.까지 계약금 45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납품계약은 해제되어 원고가 지급한 일부 물품대금은 피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3호증에는 피고의 날인만 되어 있을 뿐 원고의 날인이 없는바, 위 증거만으로는 앞서 인정사실을 뒤집고 원 · 피고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납품계약의 계약금 50,000,000원에는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이 있고 피고는 이 사건 납품계약을 불이행하였으므로 계약금에 상당하는 50,000,000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 등 금원이 수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 등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11429 판결 참조), 원 · 피고 사이에 위 선금금 50,000,000원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마스크를 매수하여 C에게 장당 820원에 전매하려는 사정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손해배상으로 그 전매차익에 해당하는 50,000,000원(장당 50원 × 100만 장)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 7호증의 기재 및 원고가 상인이라는 점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마스크를 장당 820원에 C에게 전매하기로 하였다는 점 및 피고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0. 7.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1. 5. 26.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나리